



문화재청



수신자 국립생태원장
(경유)

제목 천연기념물(수달)의 현상변경(사육) 허가 통지

1. 국립생태원 동물관리팀-899(2014.10.22.) 관련입니다.

2. 귀 기관에서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허가받는 자 : 국립생태원장

나. 대상 문화재 : 천연기념물 제3330호 수달 2개체

다. 허가사항 : 사육

라. 허가내용 및 조건 : 붙임 허가서 참조

붙 임 :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(사육) 허가서 1부. 끝.

국가지정(등록)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

허가번호 : _____

허가받는자	성 명 국립생태원장		
	주 소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대로 1210		
대상 문화재	종 류 천연기념물	지정(등록)번호 제330호	명 칭 수달
	소재지 전국 일원		
허가 사항	개 요 천연기념물(수달)의 현상변경(사육) 허가		
	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대로 1210 (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0m)		
	내 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가사항 : 사육 ○ 사육대상 :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2개체 ○ 입수경위 : 한국수달보호협회 조난구조 된 개체 중 자연방사가 어려운 개체 이전 ○ 목 적 : 수달 증식으로 종 보전 기능 수행 		
	기 간 2014-11-24 부터 2019-11-23		
허가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육 중 시설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육개체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육 및 관리경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. ○ 사육관리대장(사육장소, 개체수, 사육책임자, 관리현황 등)을 구비하여 사육 경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, 사육 개체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해당 사·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 ○ 동 허가사항은 허가기간이 도래하는 1개월 전에 사육현황 등을 명시하여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○ 사육 중 폐사한 경우 문화재청에 즉시 신고한 후 지시한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, 폐사체 처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○ 인공증식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종료 후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		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36조·제5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·제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2014년 11월 24일

문 화 재 청 장

직인 생략

국립생태원 번식 수달 이력

<< 부모개체 >>

구분	성별	식별번호(RFID)	구조시기	도입기관	도입일
1	수컷	0007154949	`13.08(생후 2개월)	한국수달연구센터	`14.10.
2	암컷	0007154A1D	`13.10(생후 2개월)		

<< 번식개체 >>

구분	성별	식별번호(RFID)	번식일자	이관 예정 기관	건강상태
1	수컷	0007DF2FB4	`18.10.21.	수달연구센터(3.21 완료)	양호
2	수컷	0007DF30F8	`18.10.21.	서울대공원(4월 중)	양호